



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1. 2. 17.] [국무총리훈령 제783호, 2021. 2. 17., 일부개정]

질병관리청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, 043-913-2347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준비·시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1.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·시행 상황의 관리 및 조정
3.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유통 관리
4.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및 위기상황 관리·대응
5.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의 지정 및 관리
6.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물품의 확보
7.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
8.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9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
10. 그 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준비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추진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수송지원본부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② 추진단의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, 추진단의 부단장(이하 "부단장"이라 한다)은 질병관리청의 차장이 되며, 추진단의 수송지원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③ 추진단의 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,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.

④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부단장과 본부장 및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⑤ 부단장과 본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1. 2. 17.>

제4조(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단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의장은 단장이 되고, 협의회의 위원은 단장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.

-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5조(자문단)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)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, 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783호,2021.2.17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